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20호

「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

강 릉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

1. 제정이유

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 등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지급절차 및 환수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
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 - 전화번호: 033-640-4064
 - 팩스번호: 033-640-4070
 - 전자우편(이메일): rhdchfhd@korea.kr

붙임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조례 제 호

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,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난임”이란 「모자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.
2. “시술”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.
3. “난임부부”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
2.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로, 여성은 강릉시에 6개월 이

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

3.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

제5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,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정부지원대상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」 지침을 따른다.

제6조(지급절차)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받아야 한다.

③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법규명 :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락처 :

제 · 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